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 3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5조, 같은 법 제48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송달하였으나, 반송되었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2019. 7. 9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우편발송기간 : 2019.06.01.~ 06.30. 발송분
2. 공시송달기간 : 2019.7. 9.~ 7. 29.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

제 목	자동차 및 이륜차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(2019년 6월)			
대 상 자	권*국(서울 중구 다산로 36길)외 234건			
법적근거	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지방세기본법 제33조			
문 의 처	기관명	서울특별시 중구	담당부서명	교통행정과
	주 소	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120-1) (☎ 3396-6232, FAX3396-8864)		

4. 유의사항

가.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부과액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,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3%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,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최고75%까지 가산되며, 또한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 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(대체압류 포함)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 끝.